

1996년 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광주광역시 서구

## 검 사 의 건 서

우리는 1997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며, 결산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 명시하여 문제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7. 7. 31

결산검사대표위원	서구의회의원	박영수
위 원	공인회계사	노관승
위 원	공인회계사	조정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목 차

## I. 일반회계

1. 세 입 .....	2
○ 세입 결산개요 .....	2
○ 과년도세입의 관리 .....	3
○ 미수납액의 징수강화 .....	4
○ 과태료수입의 관리 .....	5
2. 세 출 .....	6
○ 세출 결산개요 .....	6
○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교 .....	6
○ 불 용 액 .....	7
○ 경상경비 .....	7

## II. 특별회계

1. 세 입 .....	8
2. 세 출 .....	8

#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 I. 일반회계

### 1. 세 입

#### ○ 세입 결산개요

- 1996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과거 2개연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가)	징수결정액(나)	수납액(다)	미수납액(라)	비율	
					다/나	라/나
96년	86,853,127	96,707,292	93,139,160	3,568,132	96.3%	3.7%
95년	69,165,094	79,458,316	76,963,589	2,494,727	96.9%	3.1%
94년	86,056,800	97,111,705	94,799,569	2,312,136	97.6%	2.4%

- 상기 비교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실제수납 비율은 94년부터 매년 조금씩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6회계연도의 세입은 남구청 분구이전인 94년도 세입의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수치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실제 수납비율은 1.3%가 하락되고 미수납액도 1,255,996천원이 증가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음.

- 또한 계속된 수납율의 하락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전기(95년) 대비 1,073,405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서구청의 세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징수결정된 금액이라도 가급적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세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과년도 수입의 관리

- 1996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 항목의 세입결산내역을 전년(95년)도와 비교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과 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계
지방세	96	438,476	101,352	337,124	-	11,491	29,732	41,223
	95	429,717	145,099	284,618	10,478	18,486	9,011	37,975
	증(감)	8,759	△ 43,747	52,506	△ 10,478	△ 6,995	20,721	3,248
세외수입	96	442,496	57,618	384,878	-	24,057	24,914	48,971
	95	460,968	140,908	320,060	11,209	31,838	9,249	52,296
	증(감)	△ 18,472	△ 83,290	64,818	△ 11,209	△ 7,781	15,665	△ 3,325

- 상기 비교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96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은 전기(95년) 대비 회수실적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은 전기 이전 세입의 미수납액으로서 과거부터 누적 연체되어 이월된 체납된 세입이므로 항목의 성격상 미수납액의 관리 및 회수에 관심의 결여 및 소홀함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
- 또한 96회계연도의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가 대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정 기한경과로 인한 불납결손처리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소멸시효의 기간이내에 조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미수납액의 징수강화

- 1996회계연도 불납결손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중	기 타
일반회계	1,489,844	130,679	295,002	181,143	250,056	632,964	-
특별회계	1,988,094	4,032	-	42,998	1,369,124	71,940	500,000
계	3,477,938	134,711	295,002	224,141	1,619,180	704,904	500,000

- 상기 미수납액 중에서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무재산으로 체납된 금액(약 519백만원)은 성격상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인정되지만 징수유예,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은 약 2,459백만원(전체 체납액중 약70%차지)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일소에 대한 근무자세와 행정력의 뒷바침 그리고 체계적인 세수관리로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일부 구청에서 급여압류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하여 조만간 급여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지방세 체납은 이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세입관리상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서구청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계획에 의거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변호판 영치, 고객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통보등 97년 상반기중 체납액 정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으로서 금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철저한 근무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 과태료 수입의 관리

(단위 : 천원)

과 목	징수결정액(A)	징수액	미수금(B)	비율(B/A)
건축물과태료	136,873	60,428	76,445	55.9%
자동차보험과태료	610,970	165,761	445,209	72.9%
기 타	166,368	158,895	7,473	4.5%
과태료합계	914,211	385,084	529,127	57.9%

○ 세외수입중 과태료 관련 항목의 미수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건축물 과태료의 경우 불법건축등과 관련된 과태료이고 자동차보험 과태료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등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일정 재력을 보유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조화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상기 과태료 수입(기타과목) 중에는 결산상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의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항) 목	금액(천원)
기타사용료	790
기타잡수익	4,060
계	4,850

## 2. 세 출

### ○ 세출 결산개요

(단위: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96년	70,872,758	6,902,624	77,775,382	64,202,210	10,096,418	3,476,754
95년	60,735,989	6,659,205	67,395,194	53,481,553	6,902,624	7,011,017

### ○ 다음 년도 이월액의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96년	2,562,713	6,423,588	126,855	2,970,156
'95년	4,118,373	2,784,251	483,868	7,517,726
증감	△1,555,660	3,639,337	△357,013	△4,547,570

- 명시이월액은 2,562,713천원으로 전년도 4,118,373천원에 비해 1,555,660천원 (37.7%)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6,855천원으로 전년도 483,868천원에 비해 357,013천원(73.8%)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970,156천원으로 전년도 7,517,726천원에 비해 4,547,570천원(60.5%) 감소한 반면
- 당기 사고이월액 6,423,588천원은 전년도 사고이월 2,784,251천원에 비해 3,639,337천원(130.7%)증가하였으며, 이를 검토하여 보면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및 보상 비협의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발생액이 1,962,525천원인 바 앞으로 자금의 조기확보와 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해 사고이월 처리를 최소화하여야 할것임.

## ○ 불용액

구분	1996	1995
전체예산(A)	77,775,382천원	75,824,000천원
불용액(B)	3,476,753천원	8,280,426천원
불용액비율(B/A)	4.5%	10.9%

-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77,775,382천원 중 불용액은 3,476,753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 차지하는 불용액의 비율은 약 4.5%로서 전년도 불용액 비율 10.9%에 비해 감소함

## ○ 경상경비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물건비	자본지출
96년도	77,775,382	64,202,210	9,831,185(15.3%)	26,013,732(40.5%)
95년도	67,395,194	53,481,553	9,587,411(17.9%)	16,860,088(31.5%)

- '96년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경비로서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결산액대비 15.3%로 전년도와 비교 2.6%감소하였으며 특히, 물건비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95년도 5,194,625천원 이었으나 '96년도에는 3,383,536천원 으로 오히려 △1,811,089천원이 감소되었음.
- 자본지출에 있어서 '96년도 결산액 64,202,210천원중 자본지출이 26,013,732천원으로 40.5%를 차지한 반면 '95년의 경우 결산액대비 자본지출 비율이 31.5%로 9.0%가 증가된 원인으로는 시설비 ('95년도 12,788,915천원 → '96년도 21,761,111천원 증 8,972,196천원)등 투자사업의 재원을 늘리고 경상경비 절감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 II. 특별회계

### 1. 세 입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단위:천원)
					미 수납액
96년도	15,980,369	17,731,614	15,743,520	0	1,988,094
95년도	8,429,105	9,898,865	8,577,819	0	1,321,046

- 96년도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의료보호특별회계 2,359,872천원 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 5,649,346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614,001천원이며 신설된 폐기물센터조성특별회계가 5,357,150천원으로 4개 특별회계 총 15,980,369천 원임
- 96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 세입예산액이 7,551,264천원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폐기물센터 조성 특별회계 운영에 기인한 것이며, 폐기물센터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중 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50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시에서 당해 사업비를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시킴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세입예산액을 감액하지 않고 97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수납액에 대한 처리사항은 적정하였음.

### 2. 세 출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단위:천원)
						불 용 액
96년	15,980,369	32,390	16,012,759	9,077,315	5,627,049	1,308,395
95년	8,429,105	0	8,429,105	6,457,775	701,920	1,269,410

-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980,36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390천원 (공동주택 특별회계이월액 669,530천원은 계속비 이월액으로 96년도 예산현액에 계상)을 합한 예산현액은 16,012,759천원이었고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됨.